◎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ETF 발전방안」, 「기업공시 제도 개선방안」등 **그간 발표한 정책들을 법령에 반영**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거래량 제한 완화 (안 제7조의2)

□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15%, 종목별 30%**로 완화

(2)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안 제10조, 제11조)

□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등)를 전문투자자에 추가

□ **개인**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의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 공·사모 판단시 **모든 전문투자자**를 **청약권유 합산 대상에서 제외**

2080711 / 2016-01-20 09:5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3)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간주공모 적용 배제 (안 제11조)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발행이 금지**(법 제 165조의 10제2항)되어 있는 만큼, 간주공모제도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사모발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

(4)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 정비 (안 제38조)

□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명확화

□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직접 대출**을 허용

(5)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안 제50조, 제51조, 제272조)

□ 시행령과 규정에 산재한 **예외사항을 시행령으로 일원화하여 정리**하는 등 **복잡한 조문체계를 재정비**

□ **업무영역간 겸영 가능한 부분을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 자금 공급 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기업금융부서에서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를 확대**

○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 할 수 있도록 허용

2080711 / 2016-01-20 09:5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

○ 전담중개업무 부서의 증권대차 및 대차 중개·주선·대리업무 수행과 연계된 **차입공매도 주문 수탁** 허용

□ 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 정비**

○ 기업금융업무 중 SOC 등 **실물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여타 펀드 운용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 폐지

○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 내역의 **판매사 제공 제한 기간 완화**(2개월→1개월)

○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해외 PEF가 설립한 SPC 임직원** 겸직·파견 허용

○ **겸영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은행, 보험)의 금융투자업무 영위 직원의 **전보제한 규제**(1년) 폐지

(6) 연기금투자풀MMF에 당일 환매를 허용 (안 제77조 등)

□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기금의 단기자금 운용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당일 환매가 가능한 MMF의 대상에 연기금 투자풀이 투자한 MMF**를 추가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77조의5)

□ **지급보증**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 신용공여 한도 산정시 예외로 인정되는 신용공여의 범위를 **M&A 관련 단기 신용공여**에서 **기업금융업무 관련 단기 신용공여**로 확대 (인수, 모집주선, PF자문·주선 관련 신용공여가 추가됨)

2080711 / 2016-01-20 09:5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 주문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

○ 아울러 동 업무의 신설을 위해 **자기계약금지(제66조), 무허가 시장개설금지(제354조의2)** 조항에 **예외를 신설**

(8)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 완화 (안 제80조)

□ 집합투자기구가 **ETF 증권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

□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100%→200%)**

(9)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규제 정비
(안 제121조, 제124조의2, 제171조, 제200조)

□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 일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

□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 촉진을 위해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적용**

(10)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보고의무 폐지 (안 제371조)

□ 피처분자가 과태료 처분자에게 처분사실을 다시 보고토록 하는 **불필요한 보고의무를 폐지**

2080711 / 2016-01-20 09:5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11)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대주주 결격사유 정비 (별표 2)

□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2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전화: 02-2156-9876
- 팩스: 02-2156-9869
- 이메일: ksj30@korea.kr

2080711 / 2016-01-20 09:52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